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방송영상진흥재단 재원을 활용한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